

2023년도 제1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4.(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홍지만(분과위원장), 김민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54)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43건(안건번호 제2023-82166호~8430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82166호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사안으로,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사진 부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조치로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82167호~82194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2195호~82201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2202호~82222호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93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

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5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김민아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한승원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준근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 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5,082 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로 대신하겠음.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821 6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 판매를 위 해 민원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중이라고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본 사안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용 중인 사진의 저작물성에 의문이 있는 점,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고 존재한다 하여도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사진 부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조치로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따라서 저작권, 상표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결 의견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과 민원인의 게시물에서 파는 물품들은 모두 정품을 파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민원인은 정품을 구매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82166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D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2166호는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사진 부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조치로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821

67호~8219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82167호~82194호에 대해 원안대
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D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2167호~82194호는 게시물
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
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821
95호~8220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82195호~82201호에 대해 원안대
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2195호~8220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82202호~82222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처럼 블로그에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수익이 발생 하는가?
- 김준근 주임: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게시자들은 이런 행위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 E 위원: 요즘 MZ세대들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 등 OTT에 월 정액을 결제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이전 세대 즉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이런 블로그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세대별로 다른 것으로 보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82202호~8222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2202호~8222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82223호~8430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일반 영상, 출판/어문, 방송, 영화, 만화/웹툰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플래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82252호('플래시')는 2023.06.14.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10포인트에 판매중임. ('택배기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82312호('택배기사')는 2023.05.12. 공개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450포인트에 판매중임. ('장송의 프리렌')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83753호('장송의 프리렌')는 2021.11.25.부터 연재중인 일본 만화로 웹하드에서 60포인트

에 판매중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82223호~8430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2223호~8430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82166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82167호~82194호, 제2023-82195호~82201호, 제2023-82202호~82222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82223호~84308호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1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11.

분과위원장 홍지만

위원 김민아

위원 한승원